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접수 특례〉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59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춘석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23.
3. 회부연월일 : 2025. 4.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없되, 예외적으로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

현재 대도시나 수도권에 민간 의료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의료공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보편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접수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라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8조의2(「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으로서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항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

현행	개정안
	<u>는 폐지 등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료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자는 그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료원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2.6.10. 제정)은 인구감소지역의 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① 방문진료사업(마을주치의제도)을 도입하고, ② 의료기관의 설치와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③ 응급·심혈관·뇌혈관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④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필수의료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의료자원은 부족하여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내 의료공백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공백 → 인구 유출 → 환자 수 감소 → 의료기관 폐업’의 악순환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음.²⁾

이 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필수医료를 제공하고 지역 보건 의료기관 등과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내 의료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데,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비 지원 수준이 차이가 크고, 시설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우며, 지방의료원이 위치가 교통 접근성이 낮은 곳에 위치하여 이용률이 낮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의료인력의 소진·유출 등으로 환자수가 감소하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의 만성질환 예방·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과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와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심혈관·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医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인력, 의료서비스의 품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시설 및 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건강관리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2024.12.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³⁾

<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해당 지역 소재 지방의료원 현황 >

시·도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의료원 (총 10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대구의료원(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삼척의료원(삼척시) 영월의료원(영월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공주의료원(공주시)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남원의료원(남원시) 진안군의료원(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강진의료원(강진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안동의료원(안동시) 울진군의료원(울진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 자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www.medios.or.kr)

특히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①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

3)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X -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24.08.19.

도록 하고,⁴⁾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⁵⁾

지방의료원은 ① 지방의료원의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⁶⁾ 지방의료원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승인을 받는 등⁷⁾ 지방

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5)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생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이하 생략)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 ① (생략)

②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이하 생략)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예산 승인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②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는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외에 다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료원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인구감소 지역의 의료기반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함.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⁸⁾ 이는 기부가 사실상 공권력에 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8)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

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기부를 암묵적으로 강요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률을 나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는 법 제3조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통하여 모금의 방법이나 절차 등을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인구감소지역 외에 소재한 지방의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전국의 지방의료원은 총 37개소로 2024년 기준 인구감소지역 소재 지방의료원(10개소)의 당기순이익 적자비율은 70%이고 적자규모 평균은 약 40억 원이나, 인구감소지역외 소재 지방의료원(27개소)의 당기순이익 적자비율은 약 84.6%이며 적자규모 평균액은 약 67억 원으로,⁹⁾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황이 다른 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에 비하여 특별히 더 열악하여 기부금품 모집·접수의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이나 광고, 정보통신방 등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요구하는 행위¹⁰⁾로서 현행법상

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9) 지방의료원의 당기순이익 적자 및 재정 여건은 [참고1] 참조

1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은 불가능하나,

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민간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기탁’은 직접적인 행정목적 수행하는 경우 등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고,¹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¹²⁾ 고향사랑 기

~ 2. (생략)

3.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생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이하 생략)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이하 생략)

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부금 제도를 통하여 지방의료원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공공의료기관 중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기부금품 모집·접수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공공의료기관에는 지방의료원 10개소 외에도 적십자병원 3개소¹³⁾와 국립대학병원 2개소¹⁴⁾ 등이 있고,

적십자병원은 지방의료원과 동일하게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제공하여 지역의 공공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례 도입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 외에 다른 유형의 공공의료기관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3) 2025년 전국 적십자병원은 6개소이며, 이 중 3개소는 인구감소지역(경북 상주·영주, 경남 거창)에 위치하여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인구감소지역 외(서울 종로, 인천 연수, 경남 통영)에 위치함.

14) 2025년 현재 전국 국립대학교병원은 총 16개소이며, 이 중 부산대학교병원(부산 서구) 및 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화순) 2개소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함.

＜ 국내 공공의료기관 체계 ＞

설립형태		소관부처	보건의료기관
중앙	국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행정안전부	국립경찰병원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국방부	군병원
		질병관리청	국립결핵병원
		국토교통부	국립교통재활병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적십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병·의원
		국가보훈부	보훈병원, 보훈요양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대학한방병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병원
지자체	시·도립 시·군·구립	보건복지부	권역재활병원
		행정안전부	시도/시군구립병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 보건복지부 국가승인통계 ‘2023년 공공의료기관 현황’(2024)을 토대로 재작성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규정하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의 모집·접수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법률 개정 절차가 지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특례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수준을 제고하려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부금품법」 제5조의 입법취지와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기탁금품 접수 및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사업 지정 모금이 가능한 점, 타 공공보건의료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경기·강원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의료 실정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특례 적용 대상을 접경지역 및 접경 후방 도시 소재 지방의료원까지 확대하고, 특례 적용기한을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50

참고 1

지방의료원 재정 여건 ('24년 결산서 기준)

□ 지방의료원 별 상세자료

(단위: 백만원)

	병원명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산대비 부채 비율	의료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
인구감소지역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1,948	1,230	63%	- 2,401	- 220
	대구의료원	43,449	16,519	38%	- 21,663	- 10,408
	영월의료원	7,794	16,369	210%	- 6,547	- 1,323
	삼척의료원	11,625	12,683	109%	- 5,683	226
	공주의료원	24,001	25,127	105%	- 9,791	- 4,326
	진안군의료원	1,175	1,365	116%	- 4,183	408
	남원의료원	63,602	38,395	60%	- 14,822	- 4,932
	강진의료원	4,750	15,729	331%	- 6,088	- 2,053
	안동의료원	18,681	9,746	52%	- 10,300	- 4,973
	울진군의료원	5,963	4,261	71%	- 10,912	2,068
	평균 (총 10개소)	18,299	14,142	116%	- 9,239	- 2,553
비인구감소지역	서울의료원 (본원+분원)	51,150	111,370	218%	- 79,585	- 19,203
	부산의료원	27,216	31,078	114%	- 36,623	- 17,948
	인천의료원	17,860	10,187	57%	- 22,874	- 6,851
	경기도 이천병원	52,418	5,269	10%	- 6,914	3,497
	경기도 수원병원	10,355	6,335	61%	- 13,633	- 4,502
	경기도 포천병원	10,135	18,792	185%	- 13,033	- 5,962
	경기도 안성병원	14,085	5,171	37%	- 14,390	- 6,033
	경기도 의정부병원	5,656	32,293	571%	- 14,564	- 8,417
	경기도 파주병원	10,415	10,153	97%	- 13,429	- 4,560
	성남시의료원	35,341	8,366	24%	- 41,214	4,966
	원주의료원	42,014	12,503	30%	- 5,376	2,257
	강릉의료원	7,072	12,387	182%	- 5,432	- 1,634
	속초의료원	6,745	19,695	292%	- 8,800	- 4,941
	청주의료원	22,001	37,803	172%	- 21,923	- 14,473
	충주의료원	25,720	17,767	69%	- 12,699	- 6,070
	천안의료원	14,944	30,299	203%	- 10,038	- 6,952
	홍성의료원	27,516	18,878	69%	- 9,961	- 3,756
	서산의료원	30,011	28,041	93%	- 7,430	- 2,040
	군산의료원	105,420	15,179	14%	- 18,018	- 7,480
	순천의료원	33,820	12,983	38%	- 9,735	- 3,658
	마산의료원	27,666	12,065	44%	- 11,819	- 4,792
	목포시의료원	18,866	3,437	18%	- 6,789	- 3,256
	포항의료원	37,567	6,824	18%	- 8,154	- 2,027
	김천의료원	19,796	14,075	71%	- 5,127	1,715
	제주의료원	4,875	16,348	335%	- 9,576	- 5,535
	서귀포의료원	12,648	43,820	346%	- 17,870	- 7,186
	평균 (총 27개소)	25,820	20,830	130%	- 15,370	- 5,186

※ 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rhs.mohw.go.kr) 토대로 재작성